

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11. 23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
1. 건 명 :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11. 24. ~ 2021. 12. 0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권성진(Tel. 031-920-39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11. 24. ~ 2021. 12. 8.)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장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숲이야기 어린이집 (정0일)	141-○○- 17842-0	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	2,894,380원	2,894,38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	■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428번길 50 (1회) 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이하생략 (1회) ■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428번길 50 (2회) 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이하생략 (2회) 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53 이하생략 (1회)